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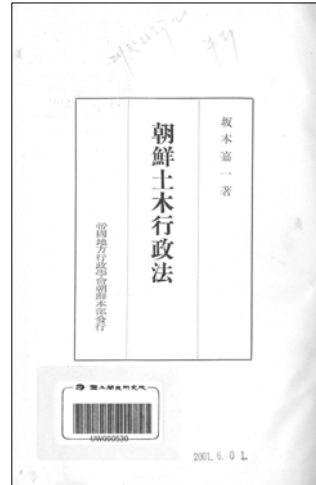
## 10 朝鮮土木行政法 조선토목행정법

1939년 / 坂本嘉一(사카모토 가이치) / 349면 / 01,30-05 사 1939

이 책은 1939년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토목사무관(土木事務官) 坂本嘉一(사카모토 가이치)의 저작이다. 식민지시대 당시 조선의 건설(토목)법령은 거의 이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朝鮮土地收用令(조선토지수용령, 1911)’, ‘朝鮮河川令(조선하천령, 1926)’, ‘公有水面埋立令(공유수면매립령, 1923)’, ‘朝鮮道路令(조선도로령, 1938)’ 및 ‘朝鮮市街地計劃令(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등이 주종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는 행정관이나 기술자를 막론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매년 졸업시즌이 되면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구인광고가 나붙는데 일본 정부의 인기부처인 재무성, 외무성과 내무성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조사부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곳이었다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2년만 근무하면 1년 간 세계일주 여행을 허락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수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조선총독의 법적 지위는 천황 직속이었으므로 장관들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조선총독은 대만총독과는 달리 법률제정권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내지(內地)에 적용하는 것은 ‘법(法)’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조선총독이 만든 법은 그 이름을 ‘령(令)’이라 했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니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였다.

坂本(사카모토) 사무관이 기초한 건설법규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동종의 일본의 법보다는 선진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를테면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 법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케 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하천령’에서는, 일본은 하천의 소유를 무주물(無主物)이라 규정한 데 반해 조선은 국유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령의 소유권에 대한 관습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역(夫役)제도는 왕조시대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는 이를 제도화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부역을 도로사업에 많이 활용했는데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1,400만 명 이상이 강제노역인 부역에 동원되었다.

어쨌든 이 책은 식민지시대 우리나라의 건설관계 법제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다.